

의안번호	제 268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제 회 임시회)

충청북도의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년월일	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년월일 : 2000. 2. 29.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의안 번호	268
----------	-----

□ 제안이유

- '91년 지방의회 부활후 제정된 의회회의 규칙을 의정여건 변화에 따라 의회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상충되는 조문과 애매모호하거나 부적절한 자구를 알기 쉽고 적절하게 수정하여 회의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의원의 청가허가 : 5일이내. 폐회중 의장허가, 5일이상 본회의 허가 → 의장허가
- 5분 자유발언제도 보완
 - 발언중지조항신설 :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의원 비방시
- 회의특기제사항 보완 : 기명투표의 경우 찬반의원 성명기재
- 회의질서 유지규정 보완 : 휴대폰등 통신기기사용 및 작동행위, 의원품위손상행위
- 비공개회의장 출입 제한규정 신설
- 방청허가 2원화 : 의장 → 의장(본회의), 상임위원장(상임위)

○도지사등의 출석요구와 도정질문(73조)

· 질문요지서(현행) 24시간전 → 4일전 질문, 답변시간 2일전 답변

○방청제한규정 강화 : 의원의 품위손상, 집단행동, 방청과 무관한 물품반입, 의정활동방해 우려자 등

○방청인의 준수사항 강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 퇴장조치 조항 신설 : 마이크사용, 슬리퍼 착용, 통신기기사용 및 작동, 방송 및 음악 청취, 허가없이 자료배포 또는 작성

□ 첨부

1.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관련법규 발췌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의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회의 회기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의장이 선포한다”를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의장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0조중 “의회에서 의결한”을 “의회에서 의결할”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회부를 할 수 있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아니한 때에는”을 “아니한 때는”으로 하고 “아니할 때에는”을 “아니한 때는”으로 한다.

제25조중 조문명칭“(동의의 의제성립)”을 “(동의)”로 한다.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때는 이미 제출한 의안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번안) 본회의의 번안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하고, 위원회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안건은 번안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의제가 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제1항중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를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으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질의와 토론 전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를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에서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37조의 2의 제1항중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를 “본회의 개의중에”로 하고 “기타”를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등 기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사안에 관한”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⑤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제2항중 “의원의 시간 제한으로”를 “발언시간 제한으로 의원이”로 한다.

제41조 제1항중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를 “참가하는 때는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로 “돌아갈 수 없다.”를 “앉을 수 없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는”으로 한다.

제46조 제3항중 “이의 유무를 물어서”를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로 한다.

제47조 제2항중 “투·개표 상황을 점검”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의 제11호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

제65조 제1항중 “심사경과의”를 “심사경과와”로 한다.

제67조 다음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준용규정)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2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와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간사로 본다.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를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조문명칭 “(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를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로
한다.

제75조중 “도지사”를 “도지사, 교육감”으로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로 한다.

제76조 제2항중 “사직의 허가 여부”를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의 조문명칭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을 “(자격
심사 청구서의 회부 및 답변)”으로 하고, 제1항중 “피심의원에게 송
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를 “자격심사대상
의원에게 답변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피심의원”을 “자격심사 대상의원”으로, “기일내”를
“답변 기일내”로 한다.

제78조의 조문명칭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등)”으로 하고, 제1항중 “의장이 답변서”를 “의장은 의원자격
심사대상 의원으로부터 답변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청구서”를 모두 “의원자격심사청구서”로
동조 제3항중 “심사보고서”를 “의원자격심사보고서”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을 “본회의에서 의
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는”으로 하며, “청구의원과 피심
의원”을 “의원자격심사청구의원과 피청구의원”으로 한다.

제79조의 조문명칭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을 “(심문과 발언)”으로 하며
동조 제1항내지 제2항중 “청구의원”을 “의원자격심사청구의원”으로,
“피심의원”을 “피청구의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피심의원”을 “의원자격심사피청구의원”으로 한다.

제81조 제3호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며, “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제7호”로 한다.

6. 휴대폰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7. 폭력행사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82조 내지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기로 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및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8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에서 교부한다.

제86조 내지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자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자

6. 기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이 부족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및 퇴장 조치) ①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 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3.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킁연 및 껌을 씹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발 취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13호(생략)

14. 기명, 전자, 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19호(생략)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생략) <u>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 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 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u> ③~⑥(생략)</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현행과 같음) <u>②의원의 청가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한다.</u> ③~⑥(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기) ①<u>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u> ②~④(생략)</p>	<p>제13조(회기) ①<u>의회의 회기와 회기연장은 의결로 정한다.</u> ②~④(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u>개 의 · 정 회 · 산 회 및 유 회 는 의 장 이 선포 한다.</u> ②<u>의 장 은 제 14 조 의 규 정 에 의 한 개 의 시 로 부 터 1 시 간 이 경 과 할 때 까 지 지 방 자 치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5 조 제 1 항 의 정 족 수 에 달 하 지 못 할 때 에 는 유 회 를 선포 할 수 있다.</u> ③<u>의 장 이 개 의 를 선포 하 기 전 이 나 정 회 · 산 회 및 유 회 를 선포 한 후 에 는 의 사 에 관 한 발 언 을 할 수 없 다.</u></p>	<p>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 의 · 정 회 · 산 회 와 유 회 는 본 회 의 는 의 장 이, 위 원 회 회 의 는 소 관 위 원 회 위 원 장 (이하 "위 원 장" 이라 한 다.) 이 선포 한다. ② 의 장 또 는 위 원 장 은 정 족 수 에 달 하 지 못 한 때 는 ③ 의 장 또 는 위 원 장 은</p>
<p>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u>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u></p>	<p>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u>의회에서 의결할</u>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u>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로부터</u>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p> <p>③(생략)</p> <p>④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순서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u>본회의 개의 중에</u> <u>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증진 등 기타</u></p> <p>②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p> <p>③(현행과 같음)</p> <p>④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p> <p>⑤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생략)</p> <p>②의원의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p>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p> <p>②발언시간 제한으로 의원이</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전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p> <p>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p> <p>제46조(표결방법) ①~② (생략)</p> <p>③의장은 안전에 대한 <u>이의 유무를 물어서</u>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제47조(투표절차) ①(생략)</p> <p>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 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u>투·개표 상황을 점점 계산하게</u> 한다.</p> <p>③~④(생략)</p> <p>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p> <p>1.~10.(생략)</p> <p><u>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u></p> <p>12.~14(생략)</p> <p>② (생략)</p>	<p>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참가하는 때는 <u>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u> <u>있을 수 없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는</p> <p>제46조(표결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u></p> <p>④(현행과 같음)</p> <p>제47조(투표절차) ①(현행과 같음)</p> <p>②..... <u>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점 계산하게 한다.</u></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p> <p>1.~10.(현행과 같음)</p> <p><u>11.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u></p> <p>12.~1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③(생략)</p> <p>(신설)</p>	<p>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심사 경과와 ②~③(현행과 같음)</p> <p>제67조2(준용규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2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와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간사로 본다.</p>
<p>제7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도지사, 교육감 ②도지사, 교육감 ③도지사, 교육감.....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자격심사 대상위원이.....답변기일내.....</p>
<p>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p> <p>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에게 송부 한다.</p>	<p>제78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등) ①의장은 <u>위원자격심사 대상위원으로부터</u> 답변서를.....</p> <p>②.....<u>위원자격심사청구서</u>.....<u>위원자격심사청구서</u>.....</p> <p>③윤리특별위원회는 <u>위원자격심사보고서</u>.....</p> <p>④<u>본회의에서</u> <u>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의 의결을 한 때는</u>.....<u>위원자격심사 청구위원과 피청구위원</u>.....</p>
<p>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u>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u>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u>청구위원과 피심위원</u>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u>피심위원</u>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③<u>피심위원</u>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79조(심문과 발언) ①..... <u>위원자격심사청구위원과 피청구위원</u>..</p> <p>②<u>위원자격심사청구위원과 피청구위원</u> <u>피청구위원</u>.....</p> <p>③<u>위원자격심사피청구위원</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껌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신 설)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u>의장 또는 위원장</u> 4. 5. 6. <u>휴대폰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u> 7. <u>폭력행사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u>
<p>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키로 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및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p>	<p>제83조(방청의 허가) <u>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5조(방청권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p> <p>②~④ (생략)</p>	<p>제85조(방청권 교부 및 기재) ①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에서 교부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p>(신 설)</p> <p>(신 설)</p> <p>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자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자 6. 기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자 <p>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이 부족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껌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설)</p>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및 퇴장조치)</p> <p>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2. 모자·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3.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껌연 및 껌을 씹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p>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p>